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55

발의연월일: 2020. 6. 8.

발 의 자: 박완주 • 윤준병 • 민홍철

김회재・전재수・이규민

이상직 • 문진석 • 양정숙

정춘숙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5조제2항,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별표에 따르면 지방대학의 장은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약학대학 입시에서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대학 의약학 계열의 지역인재 선발 현황을 살펴보면, 20 17학년도에는 전체 32개교, 37개 학과 중 권고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학교가 10개교, 10학과였으며, 2018학년도에는 31개교, 37개 학과 중 7 개교, 8개 학과가 준수하지 않았고, 2019학년도에는 31개교, 37개 학과 중 미준수교가 10개교, 13학과에 달하여 미준수율이 점차 증가하는 양

상을 보이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위한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대학의 장은 의학·약학 계열 지방대학 및 전문 대학원의 입학자를 선발할 때 해당 지역 졸업자를 일정비율 이상 선 발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선발 실적이 우수한 지방대학에 대해서는 행 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인재를 보 다 적극적으로 육성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및 간호대학 등의"를 "대학의"로,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한의학전문대학원"을 "대학원의"로,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같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및 간호대학 등의경우에는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차지하는 비율이 해당 지역의 범위 및 학생 수, 모집인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한의학 전문대학원의 경우에는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차지하는 비율이 해당 지역의 범위 및 학생 수, 모집인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 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 단서 또는 제3항 단서에 따른 선발 실적이 우수한 지방대학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지방대학 등의 지역인재 선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5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부터 적용한다.
 - ② 제15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2학년도 대학원입학전형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정 혅 행 개 아 제15조(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① 제15조(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 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의 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및 간호대학 등의 입 -----포함한다. 이하 이 항 학자 중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를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를 에서 같다-----포함한다)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 다만,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단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 서 신설> 학, 약학대학 및 간호대학 등의 경우에는 입학자 중 해당 지역 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차지하는 비율이 해당 지역의 범위 및 학생 수, 모집인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 여야 한다. ③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 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법 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학원의-치의학전문대학원 및 한의학전

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졸 업예정자를 포함한다)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 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④ 해당 지역의 범위, 비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 으로 정한다.

문대학원 입학자 중 해당 지역 -----포함한다. 이하 이 항 에서 같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 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한의 학전문대학원의 경우에는 입학 자 중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차지하는 비율 이 해당 지역의 범위 및 학생 수, 모집인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 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 항 단서 또는 제3항 단서에 따 른 선발 실적이 우수한 지방대 학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 • 재정

적 지원을 할 수 있다.